2024. 1. 25(목). 10:00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동훈 의원 등 아홉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민관 협의체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참고자료 : 붙임2

다. 입법예고 결과 (2024. 1. 16. ~ 1. 22.) : 의견없음

4.주요내용

- 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 (안 제4조)
- 라.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바. 공중케이블 정비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과 의견을 수렴함 으로써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 관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2.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5., 2017.7. 26.>
- ⑥ 삭제 <2015. 12. 1.>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7. 26.>
-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 26., 2018. 12. 11.>
-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 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 된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20.]

-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 은 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 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 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 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참고자료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디목적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시업

□2023년 지차제 정비시업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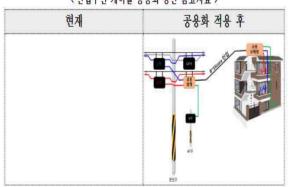
< 지자체 정비사업 평가결과 >

구분	서울시 25개 區	서울시 외 26개 市
상(17)	관악, 마포, 구로, 종로, 강북, 노원, 양천, 서대문	부산, 전주, 대구, 용인, 울산, 남양주, 구미, 안양, 부천
중(18)	송파, 동작, 중구, 강동, 금천, 도봉, 성동, 강남, 서초	광주, 인천, 대전, 창원, 화성, 김해, 수원, 성남, 청주
하(16)	광진, 용산, 은평, 영등포, 성북, 중랑, 강서, 동대문	진주, 경기광주, 평택, 포항, 고양, 안산, 제주, 천안

신기술 적용한 정비방식 도입

□ 참고자료

〈인입구간 케이블 공용화 방안 참고자료 〉



〈미니트렌칭 공법 참고자료〉

구분	기존공법	미니트렌칭 공법
도로굴착	◎ 폭(1.2m), 깊이(0.8m)	◎ 폭(0.15m), 깊이(0.45m)
관로매설	◎ FC관(내외관 분리형)	◎ COD관(내외관 일체형) 또는 MD관
도로복구	◎ 전폭 복구	◎ 굴착폭 복구
단면도		15cm 2/3/5